

의안번호	제 209 호
의 결 연 월 일	2011년 9월 일 (제 303 회)

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
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

발 의 자	하재성 교육의원
발의연월일	2011년 9월 9일

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

의안 번호	209
----------	-----

(하재성 교육의원 대표발의)

발의연월일 : 2011년 9월 9일

발의자 : 하재성, 최미애, 장병학, 박상필,
이광희, 전용천, 최진섭의원(7인)

1. 제정이유

- 『지방자치법』 제15조제1항에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과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 70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의 주민의 연서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주민이 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 제정과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경우 주민 총수 대비 연서 주민 수의 기준을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주민이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경우 연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으로 정함(안 제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합 의 :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예산과

라. 기 타

(1) 입법예고(2011. 8. 9. ~ 8. 29.) 결과, 특이사항 없음

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『지방자치법』 제15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연서 주민 수) 『지방자치법』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으로 한다. 이 경우 연서 주민 수에서 1명 미만의 단수는 이를 1명으로 본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한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해 청구한 것으로 본다.

관 계 법 령 발 취

□ 지방자치법[시행 2011. 1. 1] [법률 제10219호, 2010. 3.31, 타법개정]

제15조(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)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"19세 이상의 주민"이라 한다)은 시·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**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**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(連署)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 <개정 2009.4.1>

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2.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
3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